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2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권향엽 · 김현정 · 이주희
최민희 · 윤종균 · 문진석
백선희 · 곽상언 · 박용갑
문금주 · 허성무 · 황명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규모 유출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들인 잠재적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유출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이 일어난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된 당사자뿐만이 아닌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주체”를 “정보주체 및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항목”을 “항목(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출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 <u>정보주체</u>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 ----- ----- ----- <u>정보주체</u> <u>및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u> <u>보주체</u> ----- -----. ----- ----- -----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u>항</u> <u>목</u>	1. ----- <u>항</u> <u>목(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u> <u>정보주체의 경우에는 제외한</u> <u>다)</u>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